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마련하고,
-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항의 폐지 및 조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, 정비사업비 예치금을 종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(안 제15조)
- 상위법령의 폐지 관련조항 삭제(안 제18조)
 - 「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」에 관한 사항
-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조정 (안 제4조, 제5조의 2)

4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조항의 폐지 및 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마련하고자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금을 기존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령의 조항 폐지 및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도시환경정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